

I. 이용정원 및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1. 이용정원 :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이용정원에 대하여 별도의 정원을 두지 않는다.
- 2. 이용자 모집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사이트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기관 홈페이지, 지역신문, 지인소개, 대상자 방문상담, 지역사회 내유관기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II.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① 계약의 목적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기관을 이용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계약사항을 준수하여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라고 한다.
급여계약	① 센터와 수급자 및 보호자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 연장된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 및 보호자가 희망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해지	① 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서비스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 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⑤ 본인부담금 장기 미납하여 더 이상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신원인수인권리	①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②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소득세법」 제 59조의4 제 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 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④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⑤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신원인수인의무	①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②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③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④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으며 월 이용료 납부할 의무 ⑤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배상책임보험	①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Ⅲ.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 부담률

※ 등급별 급여 (단위:원/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 방문요양 수가 (단위 : 원/회당)

이용시간(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30분이상	16,940				
60분이상	24,580				
90분이상	33,120				
120분이상	42,160				
150분이상	49,160				
180분이상	55,350				
210분이상	61,670				
240분이상	68,030				

※ 방문목욕 수가 (단위 : 원/회당)

구분	금액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6,48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7,9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8,690

※ 방문요양 본인부담금 (단위: 원)

방문당 시간	수가	본인부담15%	본인부담9%	본인부담6%
30분	16,940	2,541	1,525	1,016
60분	24,580	3,687	2,212	1,475
90분	33,120	4,968	2,981	1,987
120분	42,160	6,324	3,794	2,530
150분	49,160	7,374	4,424	2,950
180분	55,350	8,303	4,982	3,321
210분	61,670	9,251	5,550	3,700
240분	68,030	10,205	6,123	4,082

※방문목욕 본인부담금 (단위: 원)

구분	수가	본인부담15%	본인부담9%	본인부담6%
차량이용(차량 내)	86,480	12,972	7,783	5,189
차량이용(가정 내)	77,970	11,696	7,017	4,678
차량 미 이용	48,690	7,304	4,382	2,921